

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

신청자	관할 지방자치단체명			
	소재지			
	실무책임자 성명		실무책임자 전화	
	실무책임자 소속/직위		실무책임자 e-mail	
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요	명칭			
	위치			
	면적(㎡)			
	주요 사업내용			
	주요 분산에너지사업자			
	지정목적 및 필요성			
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
위와 같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(시·도지사)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자 제출서류	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							
처리 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및 신청	→	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	→	관계 행정기관 검토·협의	→	에너지위원회 심의·의결	→	지정 고시
신청인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